

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 관한 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제3종 전염병인 나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병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탁대상사업) 위탁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나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. 나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 3. 나병의 조사·연구사업 4. 나병치유자의 사회복지 및 재활사업 5. 나환자의 입원치료사업 6. 나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·운영 7.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. 기타 나병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<p>제3조(사업의 위탁 및 경비보조) ①시장은 나병관리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을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(이하 "협회"라 한다)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시설의 설치·운영)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염병예방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나병의 예방상 필요한 진료소 또는 요양소 2. 나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<p>제5조(사업보고)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감독등) 위탁사업에 대한 시장의 지휘</p>	<p>·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13조,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지부간에 체결한 나병관리 이동진료 사업에 대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.</p> <hr/> <p>3. 地方公社江南病院所管業務報告</p> <p>(15時 19分)</p> <p>○委員長 崔 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地方公社 江南病院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江南病院 業務報告 準備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(15時 19分 會議中止)</p> <p>(15時 28分 繼續開議)</p> <p>○委員長 崔 浩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地方公社 江南病院長 나오셔서 業務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江南病院長 金權宇 報告에 앞서서 저희 病院의 幹部를 紹介하겠습니다.</p> <p>(幹部紹介: 監事 金昌根, 診療理事 俞炳旭, 管理理事 宋容皙)</p> <p>報告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평소 尊敬하는 保健社會委員會 崔 浩 委員長님, 그리고 여러 委員님, 今年 한 해도 헌신적인 議政活動을 통하여 市政이 發展되도록 指導하여 주시고, 하시고자 하는 事業이 모두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기를 祈願합니다.</p> <p>저희들은 今年 한 해 동안 世界化와 地方化의 時代的 흐름에 同參하면서 任職員 모두 團合, 江南病院 發展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</p>
---	---